##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6841 발의연월일: 2022. 8. 12.

발 의 자:김한규·송갑석·송재호

양정숙 • 유정주 • 윤영덕

임호선 · 최강욱 · 홍성국

홍정민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1년 3월 이 법의 전부개정(2021. 6. 24. 시행)으로 제주 4·3사건으로 인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사람, 관련 자료를 통해 이와 같은 사람으로 인정되는 사람 및 고등군법회의 명령과 그 명령서에 첨부된 별지 상에 기재된 사람은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으며, 재심 청구권자 중 고등군법회의 명령서와 그 별지 상에 기재된 사람들에 대하여는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이하 "위원회")가 법무부장관에게 직권재심 청구를 권고할 수 있게 됨.

그런데 위원회가 법무부장관에게 직권재심 청구를 권고할 수 있는 대상에서 제주 4·3사건으로 인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사람과 관련 자료를 통해 이와 같은 사람으로 인정되는 사람이 제외됨에 따라, 희생자 개개인이 직접 재심을 청구해야 하는 실정임.

이에 위원회가 제주 4·3사건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사

람 및 이와 같은 사람으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도 직권재심 청구를 권고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제주 4·3사건의 희생자에 대한 구제의폭을 넓히고 희생자의 명예회복을 통해 인권신장에 이바지하려는 이법의 취지를 달성하려는 것임(안 제14조 및 제15조).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사람"을 "법원에서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사람"으로,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424조및 「군사법원법」 제469조, 제473조에도 불구하고"를 "「형사소송법」 제420조 및 제424조에도 불구하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사람으로 본다"를 "「군사법원법」 제469조 및 제473조에도 불구하고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의"를 "제1항 및 제2항의"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제14조제2항의 1948년 12월 29일에 작성된 「제주도계임지구 고등군법회의 명령 제20호」와 1949년 7월 3일부터 7월 9일사이에 작성된 「고등군법회의 명령 제1호」부터 「고등군법회의 명령 제1호」부터 「고등군법회의 명령 제18호」까지 및 각각의 명령서에 첨부된 「별지」상에 기재된 사람"을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특별재심) ① 희생자로서	제14조(특별재심) ①
제주4·3사건으로 인하여 <u>유죄</u>	<u>법원</u>
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사람,	에서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
수형인 명부 등 관련 자료로서	은 사람
위와 같은 사람으로 인정되는	
사람은 「형사소송법」 제420	<u></u> 「형사소송법」 제420
조, 제424조 및 「군사법원법」	조 및 제424조에도 불구하고
제469조, 제473조에도 불구하고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1948년 12월 29일에 작성된	②
「제주도계엄지구 고등군법회	
의 명령 제20호」와 1949년 7	
월 3일부터 7월 9일 사이에 작	
성된 「고등군법회의 명령 제1	
호」부터 「고등군법회의 명령	
제18호」까지 및 각각의 명령	
서에 첨부된 「별지」상에 기	
재된 사람은 제1항의 유죄의	<u></u> 「군사법원법」 제4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사람으로	69조 및 제473조에도 불구하고
<u>본다</u> .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의 재심에 관한 절차	④ <u>제1항 및 제2항의</u>
는 그 재심의 성격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형사소송 법」과 「군사법원법」의 해당 조항을 적용한다.

제15조(직권재심 청구의 권고) ① 지원회는 제14조제2항의 1948년 12월 29일에 작성된 「제주도계엄지구 고등군법회의 명령제20호」와 1949년 7월 3일부터 7월 9일 사이에 작성된「고등군법회의 명령제1호」부터「고등군법회의 명령제1 8호」까지 및 각각의 명령서에 첨부된 「별지」상에 기재된사람에 대한 유죄판결의 직권재심 청구를 법무부장관에 권고할 수 있다.

② (생략)

4]	152	조(직	권재심	청구	식의	권고	_)	1
			제14	조제]	[항	및 7	<u> 테2</u>	항
	에	따라	재심을	을 청-	구할	수	있	<u>는</u>
	사 5	<u> </u>						

② (현행과 같음)